

04\_06. 추월(앞지르기)중의 사고

| 판결요지   | 이륜차<br>등과실 | 사건번호          |
|--|------------|---------------|
| 야간, 오르막길의 지방국도, 추월금지 장소, 구부러진 길이고 반대 차선에는 수대의 차량 접근, 도로 우측변으로 가는 원고 오토바이를 피고 버스가 추월하다가 우측 뒷부분으로 오토바이 충격, 폭 2.9m 도로(편도). 원고무과실  | 0%         | 서울고법 86나2834  |
| 편도2차선, 피고트럭 경적 등 울림없이 2차선 우측변선행 중인 원고 자전거 추월하려다가 트럭 우측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충격, 자전거 무과실  | 0%         | 서울고법 86나4069  |
| 편도1차선, 원고는 도로 우측변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뒤에 편승, 자전거 2인승차 허용되는 곳, 피고 트럭은 경음기 등 울리지 않고 추월하다 충격. 원고무과실  | 0%         | 서울고법 86나4532  |
| 6.17.20:00 편도3차선 상을 시속10km로 버스 운행하다가 우측 차체로 같은 방향의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충격. 원고과실20%   | 20%        | 서울고법 86나4821  |
| 편도2차선의 통일로 상, 8세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다 고개를 뒷편으로 돌리면서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자전거가 좌측으로 쓸림, 뒤따라오던 피고 미니버스가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충격, 원고는 도로변에 바짝 붙여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음. 원고과실20%   | 20%        | 서울고법 87나3521  |
| 편도1차선 국도, 피고 운전 레미콘차가 앞서가는 오토바이 추월위해 중앙선 넘었다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진행차선으로 되돌아오다 오토바이 뒷부분 충격. 가장자리 쪽으로 주행하지 않고 중앙선 근접 운행한 오토바이 과실 10%  | 10%        | 서울고법 89나38944 |
| 편도1차선의 영동고속도로, 피고 승용차가 경적 울림없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오토바이 추월하려다 오토바이가 도로의 오른쪽 쪽에서 중앙부분으로 나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 쌍방과실50%  | 50%        | 대법원 91다13090  |
| 편도1차선의 도로를 주행 중 도로 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 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대법원 92다27775  |
|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3차선에서  | 30%        | 서울고법 87       |

|  |     |                   |
|--|-----|-------------------|
| 우회전하려던 덤프트럭에 충격된 사고, 덤프트럭 우회전 방향지시등 작동 중. 오토바이과실30%  |     | 나2003             |
|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도로 중앙선 부근을 따라 운행하다가 뒤에 접근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우측으로 방향을 돌리다가 사고발생. 피해자과실 30%  | 30% | 서울고법 87<br>나1067  |
| 노퍽 12m의 편도 1차선, 오토바이를 타고 우측 노변을 따라 직진하던 중 앞서가던 피고 덤프트럭이 오른쪽에 있는 건축공사장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하는 것 충격, 피고 차량 우회전 신호놓고 우회전 중. 피해자과실30%  | 30% | 서울고법 87<br>나218   |
| 저녁 10:3, 편도3차선 도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선 상으로 진행하다가 40km의 속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여 가는 피고 소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 피고는 음주. 피해자과실 30%  | 30% | 서울고법 88<br>나29670 |
| 편도3차선도로, 3차선 상 주행 중인 가해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선 주행 중인 원고 오토바이 충격, 원고는 무면허, 원고과실 20%   | 20% | 서울고법 88<br>나23351 |
| 오전(08:45)에 상가지대인 편도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진행하던 차량과 위 차량 앞3차선상에 정차중인 버스를 피하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운전면허도 없이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고자 차선변경시 바로 뒤 2차선으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차선변경한 사실에 근거하여 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5%  | 서울고법 92<br>나46846 |